

『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 보완한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 -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고,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,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음
 - 공청회 14일 전 주요내용을 공보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림
 -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함

-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가 부담함
-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·관리(안 제12조)
 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등을 위하여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
 - 특별회계재원의 용도 범위기준을 정함.
-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14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 -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마련(안 제4조 내지 제7조)
 -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를 위하여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재원의 용도 범위 기준(안 제12조)
 - 자금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4조)

○ 검토 결과는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 보완한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